

개정 “ '09년 예산안작성세부지침.hwp”

재/개정 필요성

공개SW 시장 확대 및 활성화 필수 개정 요구사항

기존 ISP수립시 사용하던 ISP 수립방법론은 공개SW를 고려하는 프로세스가 미비하여 ISP사업 발주시 공개SW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 따라서, ISP 수립시 공개SW 기반의 ISP 수립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공개SW를 고려하여 사업 발주를 진행하고, 공개SW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시스템 유지보수비 또는 SW 구입비용에 공개SW 유지보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변경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 BPR 및 ISP는 타 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을 포함 * BPR은 행정업무 프로세스재설계 매뉴얼(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기존 업무처리과정중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제거	- BPR 및 ISP는 타 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을 포함 - ISP수립시 2008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간된 공개SW 도입가이드(공개SW 기반의 ISP 수립방법론)를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추가) * BPR은 행정업무 프로세스재설계 매뉴얼(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기존 업무처리과정중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제거	기존 사용되던 ISP는 공개SW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ISP 수립시 기존에 사용되던 ISP와 함께 2008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간된 공개SW 도입가이드(공개SW 기반의 ISP 수립방법론)를 참고하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SW 구입비 - 대 상 : 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상용 SW	○ SW 구입비 - 대 상 : 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상용 SW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공개SW(추가)	공개SW는 솔루션 판매비용이 아닌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SW를 구입하는 경우 공개SW는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HW 유지보수비 - 기존 유지보수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 반영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 상용 SW 유지보수비	○ HW 유지보수비 - 기존 유지보수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 반영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 공개 SW 유지보수비 추가 (추가) ○ 상용 SW 유지보수비	상동
---	--	----

재/개정 내용

83page

정보화 예산 - 예산안 작성지침

변경 전 :

☐ 기본지침

- 정보화사업은 개별부처 사업보다 다부처 연계 또는 범정부차원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
- 각 중앙관서의 정보화사업 담당관은 다음 유형의 사업의 경우 기관 내부의 예산조정 전에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간 연계·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
 -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목표로 구축하는 정보화사업 :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
 -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
 -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 개선, 보존시설·장비설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상의 시행계획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사업(GIS) :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
 - 중앙행정기관의 온나라 시스템 관련사업 :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
- 중앙관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될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된 기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경우 소요되는 HW 및 시스템 SW 구입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 요구
 - 중앙관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중 '08년과 '09년에 유지보수 대상 장비로 전환(무상 하자 보수기간 종료)되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자체 예산안에 편성하여 예산 요구
 - * 예산요구서에 <별첨1>의 「○○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이전장비 포함)」을 작성하여 첨부
-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예산 요구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계획을 함께 제출
 - * '08년도 예산 편성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적용키로 한 사업은 적용실적 또는 적용계획을 제출
- 정보화사업은 「2009년 정보화추진시행계획」 상의 사업명 및 사업내용과 일치시키고, 동 계획상의 코드(분과-부처명-사업명-재원)를 예산코드와 일치시켜 예산을 요구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
 - BPR 및 ISP는 타 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을 포함
 - * BPR은 행정업무 프로세스재설계 매뉴얼(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기존 업무처리과정중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제거
-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국가표준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하고, 콘텐츠 보안·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보안·정보보호서비스 등 정보보호, 감리 등 예산을 포함하여 요구
 - 예산요구서에 <별첨2>의 「정보보호예산 내역」을 작성하여 첨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을 요구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의 '8. 투자사업' 규정을 준용하되, 정보화 사업의 총사업비는 5년간의 장비 임차료를 포함하여 산정
 - * <별첨3>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계획(안) 제출양식 참조
-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현재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경우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2종 이상의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을 별도 제출

변경 후 :

□ 기본지침

- 정보화사업은 개별부처 사업보다 다부처 연계 또는 범정부차원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
- 각 중앙관서의 정보화사업 담당관은 다음 유형의 사업의 경우 기관 내부의 예산조정 전에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간 연계·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
 -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목표로 구축하는 정보화사업 :
 -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
 -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
 -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 개선, 보존시설·장비설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상의 시행계획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사업(GIS) :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
 - 중앙행정기관의 온나라 시스템 관련사업 :
 -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
 - 중앙관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될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된 기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경우 소요되는 HW 및 시스템 SW 구입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 요구
 - 중앙관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중 '08년과 '09년에 유지보수 대상 장비로 전환(무상 하자 보수기간 종료)되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자체 예산안에 편성하여 예산 요구
 - * 예산요구서에 <별첨1>의 「○○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이전장비 포함)」을 작성하여 첨부
 -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예산 요구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계획을 함께 제출
 - * '08년도 예산 편성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적용키로 한 사업은 적용실적 또는 적용계획을 제출
 - 정보화사업은 「2009년 정보화추진시행계획」상의 사업명 및 사업내용과 일치시키고, 동 계획상의 코드(분과-부처명-사업명-재원)를 예산코드와 일치시켜 예산을 요구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
 - BPR 및 ISP는 타 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을 포함
 - * BPR은 행정업무 프로세스재설계 매뉴얼(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기존 업무처리과정중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제거
 - * **ISP수립시 2008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간된 공개SW 도입가이드(공개SW 기반의 ISP 수립방법론)를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국가표준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하고, 콘텐츠 보안·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보안·정보보호서비스 등 정보보호, 감리 등 예산을 포함하여 요구
 - 예산요구서에 <별첨2>의 「정보보호예산 내역」을 작성하여 첨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을 요구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의 '8. 투자사업' 규정을 준용하되, 정보화 사업의 총사업비는 5년간의 장비 임차료를 포함하여 산정
 - * <별첨3>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계획(안) 제출양식 참조
 -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현재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경우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2종 이상의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을 별도 제출

※ 기존 사용되던 ISP는 공개SW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ISP 수립시 기존에 사용되던 ISP와 함께 2008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간된 공개SW 도입가이드(공개SW 기반의 ISP 수립방법론)를 참고하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세부 작성지침 - SW 구입비

변경 전 :

- SW 구입비
 - 대 상 : 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상용 SW
 -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 SW
 - 미들웨어,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백업용 툴 등 시스템 SW
 - 행정업무용 범용SW(워드프로세스, 오피스 도구 등)
 - 편성기준
 -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편성
 - *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W를 활용하거나 사업간 조정을 통해 통합 사용가능한 경우 신규 구매 지양
 - 범용 SW는 사용자 수 증가, 업그레이드 등 신규 수요 발생시 조달단가 적용 편성
 - 불법 SW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PC 신규 구매시 PC 가격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 HW 및 SW 임차료
 - 기존 임차분은 기존 계약을 근거로 임차료 편성
 - 기존 계약서를 예산 요구시에 함께 제출
 - 신규 임차는 임차기간에 따라 평균 임차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임차기간이 5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료율 1.8% 적용
 - 임차기간이 3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료율 3.1% 적용
 - 도입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이내로 편성하되 3개월 미만 임차는 지양
 - * HW 및 SW 임차료 요구시에는 임차기간, 임차료율 및 연도별 임차료, 임차료총액, 구매시 가격과의 현재가치 비교 등 관련자료 제출

변경 후 :

- SW 구입비
 - 대 상 : 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상용 SW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공개SW
 -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 SW
 - 미들웨어,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백업용 툴 등 시스템 SW
 - 행정업무용 범용SW(워드프로세스, 오피스 도구 등)
 - 편성기준
 -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편성
 - *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W를 활용하거나 사업간 조정을 통해 통합 사용가능한 경우 신규 구매 지양
 - 범용 SW는 사용자 수 증가, 업그레이드 등 신규 수요 발생시 조달단가 적용 편성
 - 불법 SW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PC 신규 구매시 PC 가격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 HW 및 SW 임차료
 - 기존 임차분은 기존 계약을 근거로 임차료 편성
 - 기존 계약서를 예산 요구시에 함께 제출
 - 신규 임차는 임차기간에 따라 평균 임차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임차기간이 5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료율 1.8% 적용
 - 임차기간이 3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료율 3.1% 적용
 - 도입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이내로 편성하되 3개월 미만 임차는 지양
 - * HW 및 SW 임차료 요구시에는 임차기간, 임차료율 및 연도별 임차료, 임차료총액, 구매시 가격과의 현재가치 비교 등 관련자료 제출

※ 공개SW는 솔루션 판매비용이 아닌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SW를 구입하는 경우 공개SW는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작성지침 - 시스템 유지보수비

변경 전 :

- (3) 시스템 유지보수비
- HW 유지보수비
 - 기존 유지보수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 반영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 상용 SW 유지보수비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토록 하되, 기능개선·성능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을 참고하여 적정 예산 반영 가능
 - 개발 SW 유지보수비
 -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 응용 SW 개발완료 후 1년간은 결함에 의한 무상하자 보수기간으로 하고, 대폭적인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 등 통상적인 하자보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보수를 지양
 -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인력이 있거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용역비용은 편성하지 않음

변경 후 :

- (3) 시스템 유지보수비
- HW 유지보수비
 - 기존 유지보수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 반영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 공개 SW 유지보수비 추가
 - 상용 SW 유지보수비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토록 하되, 기능개선·성능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을 참고하여 적정 예산 반영 가능
 - 개발 SW 유지보수비
 -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 응용 SW 개발완료 후 1년간은 결함에 의한 무상하자 보수기간으로 하고, 대폭적인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 등 통상적인 하자보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보수를 지양
 -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인력이 있거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용역비용은 편성하지 않음